

『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산동면은 2019년 4월말 인구 2만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 갖추
-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산동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) 제1항
 -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설치할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- 지방자치법 제7조(시·읍의 설치기준 등) 제3항
 -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(시·읍의 설치기준) 제3항
 -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
 - 상업·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

4. 주요내용

○ 대 상 : 산동면 ⇒ 산동읍 승격

○ 법적요건

(2019. 12월말 내국인 기준)

인구 2만이상(총족)			시가지구성지역인구(총족)		도시적산업종사가구(총족)	
인구	면적	가구	인구	구성비	가구수	구성비
25,032	58.65km ²	9,981	21,668	86.6%	7,985	80.0%

*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(시가지와 연결된 건물 밀집지역, 주거·상업·공업 연결지역)
: 신당3~15리(13,076명), 인덕3~9리(8,592명)

*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: 전체가구(9,981가구) - 1차 산업 종사가구(1,996가구)
【1차산업 종사가구 : 농업 1,826, 축산업 170】

○ 인구추이

(단위 : 명)

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3월말	증 가 율	
						2015~2019년	전년도 대비
3,700	4,438	14,613	17,756	25,032	25,962	증 576%	증 3.7%

○ 주민의견

- 산동은 불과 5년전까지 인구 3천여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 2만 6천여명의 도시와 농촌,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여 인구유입 등 지역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주민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
- 산동면민 대다수가 읍 승격시 행정적 기반 확충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각종 편의시설 기반 확충과 문화적 생활환경 등의 조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※ 읍 승격 주민조사 결과 : 전체 4,751세대 제출(산동면 전체 10,273세대의 46.2%)
[찬성 4,489세대(94.5%), 반대 176세대(3.7%), 무효 86세대(1.8%)]

○ 기대효과

- 읍 승격시 이에 걸맞은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육·문화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
- 읍 기준의 행정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충족

○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• 읍 승격 기본 계획 수립 | 2020. 1월 |
| • 읍 승격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| 2020. 3~4월 |
| • 읍 승격 추진 의회 의견 청취 | 2020. 5월 |
| • 읍 승격 신청(道경유 행정안전부 제출) | 2020. 5월 |
| •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 | 2020. 6~11월 |
| • 읍 설치 조례 제정안 의회 심의·공포 | 2020. 11월 |
| • 행정조직 등 정비 | 2020. 12월 |
| • 읍 승격 기념식 | 2021. 상반기 |

※ 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5. 참고사항

○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

6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

- 산동면 읍승격 추진을 위하여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임.
-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급속한 도시화,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동면은 인구 3천여 명의 농촌지역이었으나,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인구가 576% 증가하여 2020년 3월말 인구수는 2만6천여 명이며,
- 2019년 12월말 기준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비율 86.6%,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80.0%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.

○ 검토 결과,

- 읍승격 시 주민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산동면민 대다수가 산동면의 읍승격을 열망하고 있으며,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동면의 읍승격 추진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